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385호 2018. 9. 17(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30호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38호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1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41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수행기관 모집 공고 ----- 2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44호 폐기 공인 공고 ----- 29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2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9.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백범로 838 외 3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9. 17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8-09-17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5-72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838 (가좌동)	20090710	인천에서 옥고를 치르고 부두에서 노역을 한 바 있었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호를 따 명명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5-78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832 (가좌동)	20090710	인천에서 옥고를 치르고 부두에서 노역을 한 바 있었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호를 따 명명	
3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22-18	인천광역시 서구 대평로 61 (�심곡동)	20090922	옛날 넓은 평야가 있던 지역으로 대평이라 불려왔기에 지명을 반영하여 명명	
4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45-6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116 (가정동)	20121025	"봉오재"란 옛지명을 반영한 세번째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48-11	인천광역시 서구 간재울2길 12 (검암동)	20090922	옛 지명(자연부락)에서 유래	
6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828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97번길 38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253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97번길 40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48-3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40번1길 6-8 (원당동)	20081231	고산로 40번길에서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75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394번길 42 (왕길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94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210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177번길 108 (원창동)	20090922	북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16-3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12번길 29 (검암동)	20090922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1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70-14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22번길 16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67-2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76번길 7 (청라동)	20120330	청라에메랄드로의 시작점에서 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167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207번길 73 (원창동)	20131202	북향로 시작지점에서 약2,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42-3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31번길 13 (석남동)	20131202	북향로 시작지점에서 약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76-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2번길 4-14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7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15-5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98번안길 33 (가정동)	20150130	염곡로49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12-14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98번안길 5-21 (가정동)	20150130	염곡로49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5-63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45번길 52 (석남동)	20151113	북향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8-09-17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2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56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17번길 10 (가좌동)	20170703	장고개로 시작지점에서 약2,170m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171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98 (원창동)	20171025	북항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185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88 (원창동)	20171025	북항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15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89 (원창동)	20171025	북항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157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116 (원창동)	20171025	북항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16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95 (원창동)	20171025	북항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3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16번길 42 (청라동)	20180827	청서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160M 오른쪽으로 분기된 도로	
27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664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 66-23 (가좌동)	20090922	인천교가 생기기 전 이 부근에 있던 보도진 나루의 이름을 따서 명명 보도진 나루란 물이 빠질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나루라는 뜻	
28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665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 66-25 (가좌동)	20090922	인천교가 생기기 전 이 부근에 있던 보도진 나루의 이름을 따서 명명 보도진 나루란 물이 빠질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나루라는 뜻	
29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28-1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487번길 20 (마전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36-2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86번길 16-5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31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6-19, 956-20, 956-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34번길 23 (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70-6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8번길 7-10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3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12-2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67번길 13-1 (청라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6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4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18-5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94번길 11 (가정동)	20160701	봉오재3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9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212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93 (원창동)	20171025	북항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30호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40호(2012.6.11.)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341-3번지 일원의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경미한 변경)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경관과(032-560-459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9.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 면 적 : 15,244.5m²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 ①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1	35~39 (3.5)	주간선 도로	6,250 (108)	석남동 광3-9	대로 1-13	일반 도로		건고제54호 (70.02.09)	
변경	대로	1	11	35 (35~39) [3.5]	주간선 도로	6,250 [108]	석남동 광3-9	대로 1-13	일반 도로		건고제54호 (70.02.09)	
기정	중로	1	57	20~33 (2)	보조간선 도로	3,500 (172)	청천동 대3-17	석남동 대2-29	일반 도로		건고제658호 (68.10.23)	
변경	중로	1	57	20 (20~33) [2]	보조간선 도로	3,500 [172]	청천동 대3-17	석남동 대2-29	일반 도로		건고제658호 (68.10.23)	
기정	중로	3	325	12	국 지 도로	70	소로 2-52	롯데우람 정비구역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2	8~12 (4)	국 지 도로	167 (50)	소로 2-447	중로 1-57	일반 도로			
변경	소로	2	52	8 (8~12) [4]	국 지 도로	167 [50]	소로 2-447	중로 1-5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34	6~10 (4)	국 지 도로	363 (122)	중로 2-38	대로 1-11	일반 도로			
변경	소로	3	34	6 (6~10) [4]	국 지 도로	363 [122]	중로 2-38	대로 1-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35	6	국 지 도로	180	중로 2-38	소로 2-52	일반 도로			

기정 ※ ()는 구역 내에 관한 사항,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변경 ※ []는 구역 내에 관한 사항,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②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①	주차장	서구 석남동 491-5번지 일원	368	-	368	-	조성후 무상귀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기 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일부조항 상업지역 완화기준 적용가능

5.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층수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결정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계획	예정법적상 한 용적률	
기정	롯데 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5,244.5	획지1-1	13,029.5	주상복합	45.0%이하	450%이하	485%이하	84m이하
			획지1-2	368	노외주차장	-	-	-	-
			획지 1-1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일반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 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획지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획지 1-1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중심지 미관지구에 한함)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 시설(절대 및 상대정화구역에 한함) 				
			획지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60% 이상 건설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1-11호선변 : 6.0m 지정 중로1-57호선변 : 6.0m 지정 중로3-325호선변 : 6.0m 지정 소로2-52호선변 : 6.0m 지정 소로3-34호선변 : 6.0m 지정 인접대지경계선 : 3.0m 지정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완화 및 소형주택(전용60㎡이하) 건설 등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 30% = (485 - 450) × 30% = 10.5% 소형주택 의무 건설면적 : 13,029.5 × 10.5% = 1,368.09㎡ 이상 ※ 사업시행인가 시 소형주택면적 확정으로 건설면적 변경될 수 있음. 						
완화기준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410.0% + 공공시설부지제공 58.7% = 468.7% - 계획용적률 : 450.0% 이하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 보전	자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성도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구역 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바이오툼 공간 확장 	
	생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 방지	수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정비구역은 평탄한 지형으로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가 없으나, ◦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정비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 계획 수립 	
	산사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E급)을 받은 롯데 우람아파트는 지진 발생 시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이를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의 벽식구조로 건설을 하며, 내화 재료 사용 및 내진설계를 통한 설계시행이 필요 	
	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구역 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본 정비구역 반경 500m 이내에 석남초등학교, 천마초등학교, 가좌여자중학교, 경인여자고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으며, 상대정화구역에 속함
- 따라서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금지행위나 불허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음
- 주변 학교의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사업시행에 따른 학교 신설 계획은 없으며, 인천광역시 교육청 협의 후 부담금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음
-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가좌여자중학교와의 거리는 약 60m로 공사착공전 설계도면에 따른 학교부지의 예측일조량을 실시하여 일조량에 의한 학습 환경 지장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겠음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전 정비구역 진출입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가드펜스, 반사경, 점멸등)을 설치하겠음

8.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이하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
 -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이하)
- 향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 4호에 의하여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조합설립 후 조합정관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시 변경이 될 수 있음
 - 세입자 주거 이전비, 분양 시 우선순위 선정
 - 정비사업 시행으로 기존 거주자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일반 이주대상자와 달리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에 대한 대책마련
 - 거주자, 거주세입자로 구분하여 현실적인 이주 및 보상비 지급에 대한 대책마련
 - 향후 이주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9. 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없음)

- 시행방법 : 관리처분 방법
- 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 시행인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5,244.5	-	15,244.5	100.0	
일반상업지역	15,244.5	-	15,244.5	100.0	

○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대로1-11 중로1-15	3,804.8	256.3	15	-	구역내 해당내용

1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5,244.5	획지1	13,029.5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9	-	-	9	-	

1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3.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 축 한계선	획지1-1	도로변	폭 6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대지경계선	폭 3m 지정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역명	정비사업유형	구역면적	지정고시일	사업시행예정시기	비 고
계	-	288,821.7	-	-	
석남 2	주택재개발사업	51,447	2009. 06. 01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석남 3	주택재개발사업	20,450	2009. 09. 21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석남 4	주택재개발사업	72,269	2009. 06. 15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석남 5	주택재개발사업	58,652	2009. 09. 28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가좌주공2차	주택재건축사업	74,974.3	2009. 11. 30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청천3	주택재건축사업	11,029.4	2009. 06. 15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 주택수급현황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단위 : 가구(5년별)]

구분	주택점유 유형별 가구								비 고
	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무상	미상	
인천시	823,023	498,592	175,978	109,010	14,583	3,692	21,168	-	
중구	30,559	16,459	7,103	3,831	808	219	2,139	-	
동구	24,990	15,064	4,724	4,021	432	138	611	-	
남구	141,955	82,570	31,096	20,296	3,561	926	3,506	-	
연수구	84,744	50,029	15,711	13,460	3,806	221	1,517	-	
남동구	120,028	70,688	27,593	16,607	1,554	407	3,179	-	
부평구	175,716	104,474	37,996	27,415	1,856	796	3,179	-	
계양구	102,176	66,187	22,926	10,234	845	335	1,649	-	
서구	116,758	72,857	26,545	12,232	1,232	456	3,436	-	
강화군	21,045	16,738	2,109	761	300	147	990	-	
옹진군	5,052	3,526	175	153	189	47	962	-	

※ 자료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2010년도)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 지	면적(㎡)	
-	1	15,244.5	1-1	13,029.5	주상복합용지
			1-2	368	주차장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18.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구 분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는 도심지로서 환경부 법적 보호종 및 보호수 등은 조사되지 않음 ◦본 사업구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특별한 녹지는 존재하지 않음 ◦아파트 단지지역에 식재된 수목은 단풍나무, 은행나무, 아카시아나무, 잣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등 총 260주가 분포함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내 활용 가능한 수목은 약 56주임 ◦사업시행전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1조(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치) 및 제12조(나무은행)에 의거하여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서에 제출하여 수목의 재활용 등에 관한 협의를 득하겠음

19. 기타사항에 관한계획(변경)

-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사항을 준용함
- (기정) 교통처리계획

구 분	위 치	교 통 처 리 계 획
가로 및 교차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 운영방안 제시(3개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설에 따른 개선안 반영(213정거장)
진출입 동 선	소로 2-52호선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 북측 진출 우회전차로 설치 - B=4.0m, L=45.0m(4.0m Set-Back)
	대로 1-11호선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 남측 진입 우회전차로 설치 - B=3.5m, L=108.0m(3.5m Set-Back)
주 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주차 100% 지하주차장에 설치(용도별주차구획 분리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 북측 주민들을 위한 노외주차장 설치(16면), 기존 노상주차장 삭제(7면)
대중교통 및 보 행	중로 1-57호선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 동측 서달로상에 자전거도로 설치 - B=2.0m, L=156.0m(2.0m Set-Back)
	소로 3-34호선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 서측 보행자출입구와의 보행동선 연계를 위한 보도를 설치하고 단지내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가감속 차로 설치 - B=4.0m, L=120.0m(4.0m Set-Back)
	중로 1-57호선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달로상 버스베이 설치(1개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3개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 보관소 각동 출입구에 분산배치(5개소)설치
교통안전 및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속방지턱 추가설치(1개소) 및 이전설치(1개소) ◦주차안내 표지판 설치(1개소)

- (변경) 교통처리계획

구 분	교 통 처 리 계 획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함(단, 비상차량은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의 출입을 허용함)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변경 (종합개선안도 참조)

20. 관련서류

-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338호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자문협의회 구성 위원을 늘려서 다양한 환경보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자문협의회 구성 인원을 10인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변경함 (안 제14조)
-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경우에는 어느 한쪽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14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10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참조 : 환경보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1) 주소 : (우)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환경보전과
- 2) 전화 : 032-560-4631
- 3) 팩스 : 032-560-2751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자문협의회 구성위원을 늘려서 다양한 환경보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함

2. 주요내용

- 환경자문협의회 구성 인원을 10인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변경함 (안 제14조)
-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경우에는 어느 한쪽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14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개정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를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로, “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2조 중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를 “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에서 정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관하여 알권리”를 “접근할 권리”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

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환경은 다음의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를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을 “그 밖의 사업을 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필요한”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0인”을 “1명을 포함하여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경우에는 어느 한쪽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제6항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0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 인천광역시 서구, ----- .</p>
<p>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기본이념) 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 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p>	<p>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p> <p>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p> <p><삭 제></p>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3.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삭 제>

<삭 제>

제4조(정의) -----

----- 뜻은 -----.

1. -----이란 -----.

2. -----이란 -----.

3. -----이란 -----.

4. -----이란 -----.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를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① (생략)

② 구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생략)

-----.

5. -----이런 -----

-----.

6. -----이런 -----

-----.

제5조(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른 -----

-----.

제7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모든 국민은 구의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관하여 알권리
를 가진다.

③ ~ ⑤ (생략)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
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 ⑤ (생략)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생
략)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
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
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
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2. 3. (생략)

③ (생략)

② -----

----- 접근할 권리-----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현
행과 같음)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한다.

1. -----

----- 범위-----
-----.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로 정한 지역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지역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생략)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4조(환경자문협의회 구성) ① (생략)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② -----

----- 각
호의 사항-----.

1. ~ 4. (현행과 같음)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그 밖의 사업을 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필요한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환경자문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명을 포함하여 20명 -----
-----.

③ ----- 구청장 또는 부구청

제17조(환경오염 원인자의 비용 부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따를 수 있다.

제17조(환경오염 원인자의 비용 부담) -----

 ----- 사람은 -----

제20조(정보의 공개) -----

 ----- 범위 -----

제22조(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① -----

 ----- 범위 -----

② ----- 제1항에 따라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341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수행기관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 9.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위탁대상 사업명 :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2. 대상사무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나. 평생교육관련 기초조사

다. 정보 제공 및 상담

3. 위탁운영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3년(사업개시 2019년 1월)

※ 개관준비단 운영(협약체결일부터 2018.12.31.까지)

4. 위탁운영 사업현황

가. 시설내역

층 별	시 설 명
지상1층	주간보호실2, 학부모대기실, 식당, 사무실등
지상2층	일반교육실4, 직업체험실, 정보화교육실, 감각통합치료실, 다목적강당, 심리안정실 등
지상3층	직업교육실4, 음악교육실, 일상생활체험실등

※ 건축설계에 반영된 시설구분으로 수탁기관(개관준비운영단)과

T/F팀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교육프로그램 선정하고 교육공간은 재 구성 예정임

나. 인력구성:종사자 28명(센터장,사무원,사회복지사,보조교사, 등)

※ 특수교사 2명 반드시 포함

5. 공고 및 접수 기간 : 2018. 9. 17. ~ 2018. 10. 2.

- 접수처 : 서구청 자립지원과(제2청사 2층 장애인복지팀) 방문접수

※ 근무시간에 한하며(09:00~18:00) 토·일·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봉인 제출, 대표자 직인이 날인될 것
(날인이 없는 경우 사업계획서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접수 확인후 사업계획서 이메일 제출(dsshin65@korea.kr)

6.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하는 법인

※ 법인의 목적사업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

7. 위탁조건

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위·수탁 약정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 사항 준수

나. 매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 등으로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함 (위탁 확정 후 법인이 제출한 재정부담액을 자부담금으로 약정)

8. 구비서류

가. 수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법인정관 및 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각 1부

다.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라. 법인 현황 및 운영 계획서(소정양식) 1부
- 마.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등 증빙자료 및 타 시·도 소재 부동산은
공시·기준시가 등 증빙자료 첨부
- 바. 2016~2017년 법인 사업계획서, 예산서, 법인 사업 실적보고서, 결
산서, 회계감사, 감독청 평가결과, 공모사업 참여 실적 등에 대한
증빙서 각 1부
- 사.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소정양식) 1부(해당자에 한함)
- 아. 위탁 사업운영 계획서 (소정양식) 각 1부
- 자. 법인대표, 센터장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및 자격관련증명서 각 1부
- 차. 기타 수탁 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 ※ 위탁운영 신청서 및 신청서류는 A4용지 책자 편철 10부 제출

9. 선정방법 및 발표

- 가.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 1개의 법인만 신청하였거나 다수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심사
결과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을
거쳐 위탁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재모집)
- 나. 심사발표 : 선정자 개별 통지 및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에 게재

10. 기 타

- 가. 위탁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위탁운
영 약정서」로 별도 체결
- 나. 평가방법 및 구비서류는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 운영기관 선정을 무
효로 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팀(☎032-560-4311)로
문의바람.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344호

폐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등록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검단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과)

2. 공인의 폐기 연월일 : 2018년 9월 17일


3. 등록 공인 내역

“별첨 참조”

○ 폐기공인 내역

폐기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보건지소장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보건지소 징수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보건지소 재무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보건지소 물품관리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보건지소 지출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보건지소 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보건지소 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보건지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9월 17일	



폐기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보건지소장인 /검단보건지소민원전용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9월 17일	



폐기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류	규격	폐기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보건지소장인	기관장인	2.1cm x 2.1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변경	
2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보건지소징수관인	회계관계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변경	
3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보건지소재무관인	회계관계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변경	
4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보건지소물품관리관인	회계관계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변경	
5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보건지소지출원인	회계관계직인	1.8cm x 1.8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변경	
6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보건지소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계직인	1.8cm x 1.9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변경	
7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보건지소물품출납원인	회계관계직인	1.8cm x 1.8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변경	
8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보건지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회계관계직인	1.8cm x 1.8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변경	
9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보건지소장인/검단보건지소민원	기관장인	2.1cm x 2.1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변경	

